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공모기간 연장 알림

1. 지역균형발전과-1344(2021.3.22)호와 관련입니다.
 2. 온천에 대한 의료 및 산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도시 시범사업계획서를 2021.5.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기간 : 2021. 5월 ~ 12월(7개월)
 - 나. 사업대상 : 2개 지자체(시군구 등)
 - 다. 사업규모 : 각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 라. 선정절차 : 지자체 공모, 서류 및 발표심사
- 붙임 : 1. 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추진 계획 1부.
2. 온천도시 시범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장),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장), 대구광역시(수질개선과장),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장), 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 대전광역시(생태하천과장), 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물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로과장)

행정사무관 임군목 지역균형발전 전결 2021. 4. 30.
과장 조성환

협조자

시행 지역균형발전과-2103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522 팩스번호 044-204-8960 / mook1215@mail.go.kr / 대국민 공개

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추진 계획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온천이용인원이 정체 상황*이므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온천의 의료·산업적 이용 등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 ('13년) 60백만명 → ('19년) 63백만명
- 특히, 유럽에서 발달한 온천 치료요법(피부질환), 온천수화장품(아벤트·비쉬) 등을 활성화하여 온천의 고부가치화 촉진 필요
 - * 유명온천 소유 지자체를 중심으로 온천수화장품 출시중
- 최근 온천도시 지정기준 신설('20.6월)과 예산 확보(2억원)에 따라 온천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온천도시 지정·운영 방안 설계 필요

□ 추진 경과

- 온천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온천법 개정('10.8월)
- 온천도시 지정 지원을 통한 국내 온천발전 연구('18.12월, (주)컨설팅앤컨설턴트)
- 온천도시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온천법 시행령 개정('20.6월)
 - * 온천 온도·성분 우수, 추진실적, 온천산업 기여 등 5개항목
- 온천도시 지정신청사항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21.3월)
- 온천도시 지정관련 전문가회의('21.3월, 지질자원연구원 등 4명)

〈 온천 현황 및 온천도시 근거 〉

- 온천지역(지구·구역 등) : 총 458개소
- 온천이용인원 : 연간 63백만명 / 온천이용시설 : 총 592개소(목욕·숙박업 95%)
- 온천도시 법적 근거 : 온천법 제9조의2제1항*
 - * 행안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II 시범사업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1.5월~12월(7개월)
- (사업대상) 2개 지자체(사군구, 특별자치사도 포함)
 - * 온천도시 명칭은 지자체 명칭 이외에 온천원보호지구 명칭 등으로 설정 가능
- (사업규모) 각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 * 지자체 온천 특성화 시책에 국비 지원(지자체경상보조),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지방비)
- (선정절차) 지자체 공모, 서류·발표심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 *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

□ 심사기준(안)

- 온천 온도·성분 등 현황(30%), 그동안 추진실적(30%)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여 유명온천을 보유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

< 온천도시 시범사업 심사기준(안) >

항목(배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온천 현황 (30%)	온천 온도 우수성	10점	정량/정성평가
	온천 성분 우수성	10점	정량/정성평가
	온천 사용량 현황	10점	정량/정성평가
온천시책 추진실적 (30%)	온천 의료·관광분야 추진실적	15점	정성평가
	온천 산업화분야 등 추진실적	15점	정성평가
온천시책 우수성 (30%)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계획의 차별성 및 타당성	10점	정성평가
	온천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정성평가
추진역량 (10%)	추진체계, 주민·전문가 및 타부처와의 협업, 지자체의 의지, 온천협회·온천학회와의 협력	10점	정성평가

* 구체적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선정 및 운영 절차

- (신청) 시·군·구는 사도와 협의하여 온천도시 시범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 시·도별 1개 시·군·구로 제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개별 제출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행안부는 온천 관광산업분야 전문가, 온천협회 및 온천학회 관계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서류심사)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선정
 - * 발표심사와 병행 가능
- (발표심사)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발표 후 평가
 - *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가능
- (선정 및 지원) 시범사업 대상 발표 및 국비* 지원(2개도시, 각 1억원)
 - * 지자체 온천 특성화 시책에 국비 지원(지자체경상보조)
- (컨설팅 운영) 심사위원회를 통한 시범사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반기별)

□ 유럽의 온천도시 우수사례 현황

(지방행정연구원, 온천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p.108 참조)

구분	국가명	도시명	우수 사례
의료·관광 분야	프랑스	아벤느	아벤느 온천센터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제공, 수치료시설을 활용해 피부 미용에 특화된 온천 프로그램 제공
		비쉬	온천수를 활용한 테마별 건강프로그램이 유명, 메디컬 스파와 마사지 프로그램 유명
	독일	바트 나우하임	9개의 온천, 병원군연구소 등이 위치, 소금온천, 크나이프 요법 등 온천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바덴바덴	온천치료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 관광-온천을 연계한 80개 온천치료 프로그램 운영 극장·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헬스투어리즘 산업을 특화
	헝가리	세체니	수영, 물놀이시설, 헬스케어를 종합적으로 제공, 시정부 차원에서 무료 관광투어 버스 운행
	산업화 분야	프랑스	아벤느
비쉬			VICHY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온천 성분을 기반으로 개발된 비쉬 탄산수가 유명
독일		바덴바덴	스파용품에 관련된 연관 산업을 동시에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육성중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 효과

- 기존 목욕용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의료관광·산업적 활용 촉진을 통한 새로운 온천이용 문화 활성화 도모
- 헬스케어온천, 웰니스온천, 뷰티온천, 역사문화온천 등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개발 전략을 통한 온천 재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향후 계획

- 온천도시 시범사업 공모 추진 : '21.3.24(수) ~ 4.23(금)
- 온천도시 시범사업 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 '21.5월
- 온천도시 국비 확보 : 지속

온천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6 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성분, 이용인원 및 온천시설 현황 등에 관한 서류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서류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주민·온천관계자·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